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. 6. 22 선고 2021가단39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6. 8.

판 결 선 고 2022. 6. 22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들이 D와 사이에 2020. 2. 12. 각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들은 D에게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20. 2. 13. 접수 제3866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D와의 신용보증약정 또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아래와 같은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있다.

① 1,327,887,880원 및 그중 1,321,969,199원에 대하여 2020. 11. 10.부터 2021. 5. 21.까지는 연 8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지연손해금(2014. 1. 22.부터 2019. 5. 17.까지의 E조합법인의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2020. 10. 23.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채권, 이 법원 2020가단57470 판결)

② 308,028,746원 및 그중 306,550,395원에 대하여 2020. 12. 15.부터 2021. 2. 9.까지는 연 8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지연손해금(2015. 6. 5.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2020. 12. 4.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채권, 이 법원 2020차전5114)

나. D는 2020. 2. 12.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(채권최고액 피고 B 6,000만 원, 피고 C 4,800만 원, 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그 다음 날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다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D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합계 221,880,000원, 전남 무안군 F 전 1,653㎡ 7,434,000원 합계 229,314,000원이 있었고,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 16억 원 이상으로 D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.

라. D는 피고 B의 친구 작은아버지이고, 피고 C의 외삼촌이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12의 각 기재(가시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,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

2007다45364 판결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은 선의 항변을 하나,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화량

별지